

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산배드민턴협회 중재(안)

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임원과 대의원은 원만한 업무추진과 협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.

1. 부산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은 별도의 사조직(전문/생활)을 구성·운영 할 수 없다.

2. 부산시배드민턴협회 규약 개정

- 부산시배드민턴협회의 규약개정 소위원회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며 11월30일까지 개정(안)을 완료한다.

※ 단,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에 불참하는 측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- 개정(안)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 12월31일까지 시행토록 한다.

3. 부산시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원구성 : 위원은 16개 구군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- 기 능 : 생활체육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를 계획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그 외 추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- 운 영

▶ 협회장과 생활체육위원장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, 생활체육위원장은 계획 수립시 협회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.

▶ 생활체육위원회는 별도의 예산집행은 할 수 없으며,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회 사무국 생활체육담당 사무국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다.

4. 부산시배드민턴협회 사무국 및 사무국장 운영

- 사무국과 사무국장 운영은 현재와 같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담당 사무국장이 강서실내체육관내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문체육은 전문체육 담당 사무국장이 사직실내체육관내 사무실을 운영하며, 구군사무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.
-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5. 구군배드민턴협회 임원 인준동의

- 부산시배드민턴협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3조에 의거 구군배드민턴협회에서 인준동의 요청시 별다른 사유(규정 및 절차 위배)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 인준동의를 회신해야 한다.

※ 단, 구군배드민턴협회는 인준동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요청시 조속한 시일내 협조하여야 한다.

6.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근거하여 부산시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2017년 11월 10일

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

위원장

정만희

